2014년 11월 28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통신 · 방송 · 인터넷은 11월 27일(목) 12:00 이후 보도 가능

www.smba.go.kr

넓게 듣겠습니다
바르게 알리겠습니다

보도자료

성장 중소기업 든든한 동반자
중소기업청
Small &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

• 문의 : 기술협력보호과 • 과장 : 김봉덕 (042-481-4399) • 사무관 : 류선미 (042-481-4459)
• 주무관 : 성홍석 (042-481-4400)

중소기업의 핵심기술, 기술보호에 대한 해답을 찾다
- 「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」 11월 29일 본격 시행 -

□ 중소기업청(청장 한정화)은 올해 5월 28일 공포된 「**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**」이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**11월 29일부터 본격 시행**된다고 밝혔다.

○ 이로써, 대기업에 비해 대체로 **보안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지원**하고 **기술보호 지원기반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**할 수 있는 **법적 토대가 마련**되었다.

□ 기존의 기술보호 관련 법률*들이 기술 유출과 침해에 대한 사후 처벌 등 규제 위주였던데 반해,

*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(산업부),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(특허청) 등

○ **중소기업기술보호법**은 **기술유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지원법**적 성격을 띠고 있다.

□ 총 7장 34개 조문으로 구성된 **중소기업기술보호법의 주요 내용**은 다음과 같다.

① **(기술보호 추진체계)** 기술보호 3개년 지원계획 수립, 기술보호 정책 수립·추진을 위한 관계행정기관·전문가 등과의 협의·자문, 기술보호 실태조사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침 마련 등 기술보호 지원정책 추진에 필요한 체계를 정비하였다.

② **(기술보호 지원사업)**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애로 해소를 위한 상담·자문 및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활용 지원,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등 지원사업의 법적 추진근거를 명확히 하였다.

③ **(기술보호 기반조성)** 기술보호 지원 전담기관 지정,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, 보안관제서비스 및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등 중소기업 기술보호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.

④ **(기술유출 사후구제)**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'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·중재위원회'를 설치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분쟁에 대해 신속·원만한 해결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.

□ 이 법의 시행으로, **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중장기 지원계획이 수립·추진**되고 **기술보호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 지정**되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술보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.

○ 무엇보다 기술유출 분쟁에 휘말린 중소기업이 **'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·중재위원회'의 조정·중재 제도를 활용**하여 **신속하고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**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.

○ 기술분쟁 조정·중재위원회에 설치될 조정부와 중재부를 통해 비공개로 조정·중재를 진행함으로써, 중소기업이 법적 소송을 진행할 경우 감내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과 분쟁 해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들이 법률 제정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**법률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**할 계획이다.

○ 우선,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업무를 전담할 **기술보호 전담기관을 올해 안으로 지정**하여 기술보호 지원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. 다만, '14년도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사업*은 올 연말까지 현행 사업수행 기관에서 그대로 진행한다.

* 사업별 수행기관('14년) : (기술보호 상담 및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)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, (기술자료 임치) 대·중소기업협력재단, (기술지킴 서비스) 산업기술보호협회

○ 또한, 기술유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내년 초부터 조정·중재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**'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·중재위원회' 설치를 연내 완료**할 예정이다.

□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이번 「중소기업기술보호법」 시행으로 자금과 인력 부족으로 그동안 기술보호에 어려움을 겪어 온 중소기업들이 **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지렛대 삼아 스스로의 기술보호 역량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계기가 마련**되었다고 밝혔다.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류선미 사무관(☎042-481-445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< 참고 1 >

「중소기업기술보호법」 제정 개요

□ 제정 목적

○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종합적인 기술보호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

□ 제정 경과

○ 김동완의원 대표발의('13.11.7), 국회 통과('14.4.29), **공포(5.28), 시행(11.29)**

□ 법률 주요내용 (총 7장 34개 조문)

○ **(지원계획 수립·추진)** 3개년 지원계획 수립, 기술보호정책 수립 자문·협의, 실태조사, 기술보호지침 제정 등 기술보호 추진체계 수립

○ **(기술보호 지원사업)** 기술보호 애로해소를 위한 상담·자문, 임치제도 활용 지원, 해외진출기업 기술보호 등 지원사업 추진

○ **(기술보호 기반조성)** 기술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,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, 보안관제서비스 및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등 인프라 조성

○ **(기술유출 사후구제)** '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·중재위원회' 설치·운영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분쟁의 신속·원만한 해결 유도

□ 법 제정 효과

○ **(기술보호 역량 제고)** '17년까지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을 대기업의 75% 수준까지 제고 (* '13년은 대기업의 66% 수준(중기청))

○ **(기술유출 예방)** 기술보호 지원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기술유출 피해 예방

○ **(소송부담 완화)** 기술분쟁에 대한 조정·중재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관련 소송비용 및 시간 절감

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

총칙 (4개 조문)		지원시책 (30개 조문)
· 목적(제1조) · 정의(제2조) · 정부 등의 책무(제3조) · 다른 법률과의 관계(제4조)	(제2장)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	·기술 보호 지원계획의 수립(제5조) ·기술 보호정책 자문(제6조) ·보안역량강화를 위한 실태조사(제7조) ·기술보호지침의 제정 등(제8조)
	(제3장) 기술보호 지원사업	·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(제9조) ·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 보호 지원(제10조) ·의견제시 및 개선권고(제11조) ·중소기업기술 보호진단 및 자문(제12조) ·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(제13조)
	(제4장) 기술보호 기반 조성	·기술보호지원 전담기관(제14조) ·보안기술개발 촉진 및 보급(제15조) ·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(제16조) ·기술보호 홍보·교육(제17조) ·기술보호관제서비스 제공(제18조) ·보안시스템 구축 지원(제19조) ·국제협력(제20조) ·기술보호 상생협력(제21조) ·중소기업기술보호 포상(제22조)
	(제5장) 분쟁조정 및 중재	·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·중재위원회 설치(제23조) ·조정·중재원의 제척 등(제24조) ·분쟁의 조정 등(제25조) ·분쟁의 중재 등(제26조) ·자료 요청 등(제27조) ·조정·중재비용 등(제28조)
부칙	(제6장) 보 칙	·조세에 대한 특례(제29조) ·청문(제30조) ·권한의 위임·위탁(제31조) ·비밀유지의무(제32조) ·벌칙 적용시의 공무원 의제(제33조)
·시행일(공포 후 6개월 경과)	(제7장) 벌 칙	·벌칙(제34조)

< 참고 2 >

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·중재위원회 개요

□ 위원회 설치근거

○ 「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제1항

법 제23조(중소기업기술 분쟁조정·중재위원회의 설치)

①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·중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·중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□ 위원회 일반사항

○ 위원회 심의 · 의결사항

1) 분쟁의 조정·중재에 관한 사항, 2) 조정부 및 중재부 구성에 관한 사항, 3) 위원회 규칙 제정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, 4)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(※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)

○ 위원회 구성, 위원 자격·임기 등

▣ 위원회 구성 : **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**

▣ 위원장 선임 : **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**

▣ 위원 자격

·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로서 기술 또는 정보 보호 관련분야 전공자

·②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로서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경험 보유자

·③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

·④ 변호사, 변리사, 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자

·⑤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에 따른 기술거래사

·⑥ 그 밖에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▣ 위원 임기 : **3년 (연임 가능)**

▣ 위원 임명 · 위촉권자 : 중소기업청장

□ **분쟁의 조정** (※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5조)

○ **(조정부) 3명 이상 5명 이하 위원**으로 조정부 구성

* 조정부의 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, 조정위원은 조정부의 장이 지명

○ **(조정부의 장) 변호사 또는 변리사** 중 **위원장이 지명**

* 위원장은 조정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조정부의 장 지명

○ **(의결)** 조정부의 장을 포함한 **조정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**으로 의결

○ **(효력)** 조정 조서는 **재판상의 화해**와 동일한 효력

※ 중소기업기술보호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,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「민사조정법」 규정 준용

□ **분쟁의 중재** (※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6조)

○ **(중재부)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**으로 중재부 구성

○ **(중재부의 장) 법관 또는 변호사** 중 **위원장이 지명**

* 위원장은 분쟁 당사자가 중재부 선택방법(위원장에게 중재부 지정을 위임하거나, 위원장이 제시하는 중재부 중 하나를 당사자 합의로 선택)을 결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중재부 구성을 완료

○ **(의결)**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**중재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**으로 의결

○ **(효력)**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간에 **확정판결**과 동일한 효력

※ 중소기업기술보호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,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「중재법」 규정을 준용

< 참고 3 >

2014년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사업(2014.10월말 기준)

1. 기술보호 상담 (사업 수행기관 :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)

○ **(개요)**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한 분야별(보안, 법률, 신고·수사 등) 전문상담 실시,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 조사 등

○ **(지원내용)** 전문상담 자문수당 지원(11일 이내, 보안교육 1일 포함)

○ **(상담실적)** '09년 이후 **총 2,725건**

2. 기술자료 임치 (대·중소기업협력재단)

○ **(개요)**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 및 협력기업간 안정적인 기술사용 보장 등을 위해 기술자료를 임치기관(기술자료 임치센터)에 등록·보관

○ **(임치대상)** 특허권·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, 제조·생산 방법과 판매방법 등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·경영상 정보

○ **(임치실적)** '08년 이후 **총 14,903건**

3. 기술지킴(보안관제) 서비스 (산업기술보호협회)

○ **(개요)** 내부직원에 의한 핵심기술 유출 방지 및 사이버 침해사고 방지·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중소기업기술지킴센터 구축·운영

○ **(지원내용)** ①기술보호 수준 및 보안 취약점 파악 등을 위한 사전점검, ②네트워크, 시스템 장애 등에 대한 24시간×365일 실시간 모니터링, ③침해사고 발생시 원인분석 및 대응 보안 솔루션 지원 등

○ **(서비스제공 실적)** ('11) 253개사; ('12) 521개사; ('13) 1,019개사; **('14.10) 1,659개사**

4.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(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)

○ **(개요)** 중소기업의 보안인프라에 대한 정밀진단 및 설계를 통해 기업환경에 적합한 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

○ **(지원내용)** 네트워크, 서버 및 PC보안, 문서보안 등 기술적 대응 솔루션과 출입관리 등 물리적 대응 솔루션 구축

○ **(지원조건)** 총 비용의 50% 한도 (기업당 4천만원 이내)

○ **(지원실적)** '13년 27개사 지원 완료, '14년 27개사 지원 중